

제40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22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1)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
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6)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3)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2)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2)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
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
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7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7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7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8)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
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
8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
8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
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2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9)

상정된 안건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8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8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8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8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8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8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8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8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8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8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8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8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8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8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8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8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1)	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9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9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9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9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9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50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	51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51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51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51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51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	51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	51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	51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	51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	51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51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51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51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51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	51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51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51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51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51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	51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51

(10시13분 개의)

(의안번호 2105259)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득세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종일 취재를 하는 대신에 회의 시작 시에 언론인들이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부터는 종일 취재는 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전체 논의해야 될 안건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의 속도를 조금 더 높였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관련된 사항 위주로 논의 진행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순서는 어제 열 번째 소득세법 관련된 사항까지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661)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559)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4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44)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0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96)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82)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143)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10시15분)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그리고 제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27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어제에 이어서 소위 자료 91 쪽입니다.

11번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10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15%, 1000만 원 초과분 30%에 대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은 1000만 원 이하분의 경우에도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정희용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안은 2022년 한 해에 한해서만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는 30에서 35%로 각각 5%p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부금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기부금의 15% 또는 3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연혁을 보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왔습니

다. 2013년 개정 시에는 3000만 원 이하가 15%, 3000만 원 초과가 25%였습니다.

이것을 2015년 개정 시에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0%로 인상되었고 고액기부 기준도 3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하향되었으며, 2018년 개정 시에는 고액기부의 기준이 다시 1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개정 시에는 21년에 한해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1조 80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의 기부참여율 하락 추세와 다른 국가 대비 낮은 현행의 세제혜택 등을 감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기부한 사람의 비율인 기부참여율이 2011년 36.4%에서 매년 감소해서 2021년에는 21.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캐나다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송언석 의원님 안 그리고 정희용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15%로 계속 정채되어 있는 소액기부의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소액기부 유인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인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 2022년도에 한해서 5%p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코로나19 및 공급 충격에 따른 피해로 취약계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 상향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제율 상향과 기부금 실적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제율이 기부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의 주된 결정요인은 경제적 형편이나 또는 심리적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례를 보더라도 2018년도까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을 19년부터 30%로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2019년도의 기부금 증가율 4.55%는 제도 변화가 없었던 2018년의 기부금 증가율 4.54%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송언석 의원님 안 관련해서 10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초과분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이 사라져서 고액기부 장려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안은 한시적으로 2022년에 대해서만 상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액공제율의 한시적 상향이 추가적인 기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기부금 총액의 확대 없이 약 3100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 항구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인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의 형평성도 있고 재정부담이 워낙 커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기부문화를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는 매우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이렇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실제로 기부금이 늘어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런 조치에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료를 봐도 기부참여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조세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제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기부문화 활성화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둔다고 하더라도 세제에 있어서의 분명한 효과 없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정부안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5%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하자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2021년에 어떻게 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한시적으로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고용진 위원 세수효과와 기부금 실적 평가는 혹시 있어요, 정부 안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부금은 금년까지 좀 걷어 봐야, 20년도까지는 기록이 있는데 21년 것은 아직 안 나온……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5% 한시 상향한 결과는 지금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정부는 이 안을 왜 냈습니까, 그것 없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기부금의 신고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형편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기부금 문화가 꺼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21년에 그런 이유로 상향한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기부금 실적과 뭔가 근거를 가지고 다시 가 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장혜영 위원님 말씀이나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그것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감이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정부안으로 3100억이잖아요. 조세지출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뚜렷한 산출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분석보고서를 보면 기부금이 증가한 비율과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과의 연관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부금의 증가율이 굉장히 콘스탄트(constant)하게 4.5%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기부금 자체의 규모는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지적인 대로 경제상황이라든가 심리적인 요인들이 기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사실 세율 자체의 플러스 요인으로 인해서 기부금 규모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율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의 확대가 기부금의 증가 추세와 연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또 자세하게 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 인상을 했는데 올해 여전히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또 고물가고 그런 상황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고용진 위원** 한시라는 의미가 그런 거지, 원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리고 나중에 이게 끝나면 그때 가서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4페이지의 밑에 32번 보시면 2016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기부금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감소한 사람들은 형편이 악화됐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을 하면 어떤 기부문화, 나눔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올해 연말까지 인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여전히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좀 아쉬운 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2022년도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는 이 시점은 2022년도가 다 경과해 가는 시점이고 국회가 늦게 이 부분을 다루는 건 우리

책임일 수도 있어서 그러면 정부가 이 법안을 언제 제출했는가 봤더니 9월 1일 날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미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했다는 거지요.

기부행위가 물론 연말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 방향들이 서면 정부에서 좀 일찍 제출해 주시고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1000만 원 이하분하고 초과분 분리해서 2011년도부터 관련한 세액공제랑 기부금의 추이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귀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 전부 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그룹의 상위 10% 내지는 20%라도 어떤 곳들인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유동수 위원님 지금 나가셨는데, 제출했던 게 9월 1일이지만 실제로 발표는 언제 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발표는 4월에 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왜냐하면 어나운스먼트 이펙트(announcement effect)라고 할까, 공표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작년에도 소득세법 부대의견에 세법개정안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을 해달라고 기재위에서 한번 부대의견이 달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2000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할 때도 연말에 개정을 했지만 연중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어나운스할 때하고 법안 제출할 때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현행보다 세액공제 5% 더 해 준다고 해서 기부금 조금 더 내고 '5% 해 주니까 더 내야겠구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라도 5%를 세액공제를 안 해 주네, 그러니까 나 안 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사실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커지는 부분만큼 기부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부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천차만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증명되지도 않았잖아요. 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보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법이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종부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계속 이렇게 깎아주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특히 집권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절충안을 내거나 또는 대안을 내는…… 이렇게 해서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런 세금은 공제 안 해 줘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대안을 내고 3000억씩이나 세수결손을 감수하려고 하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것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시지요. 관련되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하고 또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과관계라든지 또 필요성에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리 공표를 해서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96쪽입니다.

복권당첨금이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현행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슬롯머신 당첨금품의 경우에는 건별 200만 원, 경마나 스포츠토도 같은 경우에 최대 200만 원까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복권당첨금의 경우에는 5만 원이 과세최저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권당첨금의 경우에는 5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표적인 복권인 로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3등 당첨금액의 평균이 149만 원이고 4등 당첨금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등 당첨금까지는 비과세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3등까지 비과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경우에 복권의 사행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만 원 수준으로 과세최저한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최저한이 2015년 세법 개정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 스포츠토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배,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슬롯머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강화했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앞으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은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리면 과세형평을 위해서 200만 원으로 조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른 당첨금들은 과세를 강화한 것 아니냐 했는데 강화가 돼서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저는 국가가 이렇게 복권을 비롯한 사행사업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도 이렇게 낮추는 게 맞지 오히려 반대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되게 지금 정부…… 나 중에 한번 다 계산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세금 다 깎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동의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 전에 기부금 문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정부가 감세를 대폭 해 줬을 경우 세입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먼저 내놓고 이런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걸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차관님, 이것을 200으로 올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경이 뭐예요?

그냥 승마, 슬롯머신 이런 것하고 형평을 맞추는 게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로또 복권수입이 감소해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어서 갑자기 이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롯머신이나 다른 승마, 경륜 이런 것하고 차이 나게 복권은 대다수 국민이 1인당 소액만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권수익금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41.7%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이나 장학사업·복지사업·문화예술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복권은 저소득층에 더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첨금하고 과세 불형평이 일어나서 과세는 더 많이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맞추고자……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을 낸 배경 말고, 경마·슬롯머신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복권수입을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든지,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정부 측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기도 상향을 해 가지고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오로지 그것뿐이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권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복권을 주로 사시는 분들이 고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중산층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과세율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홍영표 위원 준조세예요, 세금 걷는 거라고.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첨된 당첨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저과세한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사시는 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당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납득은 안 가는 데, 추진 근거가 설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진선미 위원 저는 이게 이유가 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는 규모 아니면 승마 환급금, 당첨금, 이 규모가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복권이 한 해에 구매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복권이 21년 같은 경우에는 6조 정도 됩니다.

○진선미 위원 6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매출액이.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들여다 볼 때는 복권의 당첨금에 비과세다, 계속 무슨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시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걸 비과세해서 서민들이 복권을 더 사게 만들어서 복권의 구매규모를 키우고 결국 그걸로 인해 기금의 규모가 키워지는, 그래서 지금 계속 비과세가 많아지는 세수감면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 상쇄하려는 느낌, 저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담뱃세 높여 가지고 다른 비과세 하는 것을 메꾼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세제실장님, 당첨금 최저과세한을 상향하면 사행산업이 조장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도 이게 혹시나 사행산업이 조장될까 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00에서 200으로 낮췄는데 복권만 그때 안 올렸고, 복권은 낮은 수준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행산업보다 복권이 저소득층에 더 유리한데,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출에 더 많이 쓰이는데 복권만 이렇게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서 더 많이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법개정안을 가져온 거고요. 사행산업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복권당첨금 또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이라는 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행산업도 여기에 수많은 종사자들이 있다는 그 현실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사행산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논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에서 이 최저과세한 상향에 대해서 이 건 정말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라면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사회의 필요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산업 자체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고 많은 종사자들이 여기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타 사행산업과 복권사업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을 사행산업 전체 또는 다른 저의, 배경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아까 제가 잠깐,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법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말씀을 서로 나눠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형평성을 거론하시는데 승마·경륜·슬롯머신 이런 사행산업들을 현행 복권 과세 체제 안에 맞추는 형평성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왜 복권을 이쪽에다 맞추려는 법안 개정안은 제시하는데 거꾸로는 형평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해외의 경우 보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 독일 일본이 전부 다 복권당첨금에 대해서 사실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1만 위안, 그러니까 한 190만 원, 미국은 한 5000불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과세최저한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다들 높은 수준에서 과세최저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98쪽 비실명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면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사채 거래에 대한, 사채

에 대한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금융회사의 예적금에 대해서는 14%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실명이 확인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명이 확인 안 된 비실명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2%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원래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구간과 똑같이, 그러니까 실명이 확인 안 되면 그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이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인상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을 단축하는 안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매 분기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그 분기 끝나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다만 2021년 3월에 소득세법 개정을 함에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입니다.

현재 부가세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매입자한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

한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매입자 측에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쪽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2007년도에 처음 신설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부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은 부도나 폐업 등 공급자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법에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서 일반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으면 매입자 측에서는 얼마에 내가 이걸 사서 필요경비를 계상해야 될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위해서 매입자가 임의로 계산서를 작성·제출하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 부과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부가세법과 유사한 형태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실제로 납용이 되거나 악용이 될 여지가 있는 지점들은 없나요?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전혀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전혀 없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관련되는 내용이 지난번에도 충분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앞의 내용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6항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02페이지입니다.

회사가 종업원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한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지급액 그다음에 세율 및 세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총지급횟수, 총지급액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약식으로 하는 것들이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월별로 하기 때문에 총지급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자 성명, 누가 얼마 받았는지 그다음에 몇 % 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가 소득지급액 및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세법 개정 시에 근로장려금을 기존에는 연 1회 지급했는데 이것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서 소득을 상하반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간이지급명세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간이지급명세서 도입 당시에는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것은 주로 보험설계사라든지 방문판매원, 캐디, 배달라이더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 세법 개정에서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보험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월단위 소득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기존에 매 반기에 지급하던 것을 매월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매 분기 3개월마다 하던 것을 매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 내용이 103쪽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그리고 그 밖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상용근로소득 지급자의 경우에는 매 반기마다,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마 2021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 중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지 않고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신중검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올해 다시 새롭게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 현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님 안은 상반기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연료를 받는다는지 아니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자격자들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5쪽 표에 보시면 김정호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현재 음영 친 부분이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정부안의 경우에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기존에 연 2회 하던 것을 매월로, 그다음에 기존에 제출하지 않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6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김정호 의원안 관련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하반기 지급명세서 제출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상용근로소득의 경우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는 1월 말에 한 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급명세서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간의 간격이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반기 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반기 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일 3월 10일까지 소득과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안은,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으로 상용근로자 중에서 임시직이라든지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현재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소득과악이 된다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배달라이더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소득을 현재 연 2회 제출하던 것에서 매월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뒤에서 살펴보실 가산세 부과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영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용근로소득을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기반 인별 관리체계의 적용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로 직업이 아닌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획을 수정해서 2022년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과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3년도에, 내년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방향에서는 단축 필요성이 있겠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의 전환 추진상황 그다음에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가령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호 의원님께서 20년 7월에 의안을 제출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서, 지금 상황이 달라진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김경호 의원님께서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하반기 것을 취소하게 되면 사실 근로장려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납세자 부담을 고려해서 준비기간 1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된 것처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도입 방안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된 다음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사실 저희가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자료 관리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법이 먼저 고쳐져야 고용보험이 24년도에 시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소득기반 고용보험체제로 전환하려는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필요하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용근로소득 또 상용근로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이런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한 쪽에서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지급한 쪽에서……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할 때,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때는 고용보험을 노무사만 하게 했다가 그것을 또 세무사들은 팩스로, 전산에 접근을 못 해 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납세협력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급한 쪽에서만 하는 건지, 특히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부정기적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경호 어디 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원천징수 4.4%를 떼고 강연료를 받지 않습니까? 가령 40만 원이 강연료라고 하면 삼십몇만 원을 받고, 그러면 지급한 대학이든 거기에서 내가 이분한테 얼마 떼고 돈을 줬다라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당사자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부담이 없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다 전산화해서 처리하는 건데…… 이게 되어야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납세협력비용 증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돼야 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상용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더 공감이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 고용보험법 개정이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차관님께서서는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고용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고용부에서 고용정책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나와 있으니까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고용보험법을 고용형태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무제공자, 예술인과 똑같이 모든 가입자들에 대해서 소득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려는 부분들이 원래는 25년까지였는데 저희가 앞당겨 가지고 24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소득 제출을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제출토록 한 것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어쨌든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관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기간과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거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근로장려금과 같이 동일하게 기재위에서 했다고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회보험은 환노위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고충은 뭐냐 하면 환노위에 저희가 법안을 냈을 때 이 선결조건인 소득 인프라가 돼 있느냐를 환노위 위원님들이 여쭙보실 것입니다. ‘그건 기재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똑같이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 법을 개정했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작동이 안 되면 이 법이 실행될 수 있느냐, 이런 똑같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인프라로서 이 부분들이

먼저 되는 것이 향후에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기에 조금 유리하겠단, 그것이 더 수월하겠단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주들의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기재부, 국세청,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별 소득 제출이 되면 상용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쨌든 보험이나 세금이나 매월 내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각각 구축돼 있다 보니까 사업주들의 행정부담이 좀 있어서 이참에 상용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제출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4대보험과 징세의 제출사무라든지 납부사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프라로서 이 부분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각종 사회보험의 징수체계라든지 이 개편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도개편을 할 수 있는 터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노동부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2020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서 소득과약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제 질문이 안 끝났는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안 끝났어요?

○**진선미 위원**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또 하면 되니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아까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마 고용부나 기재부에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이런 주요 협회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횟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진선미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2회에서 12회 제출로의 변경이 6배로 업무가 가중이 되는 건데 이분들도 이 전체적인 제도 변화의 추세에는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기본적으로 운용체계의 핵심인 고용보험 관련법에 정산절차와 정산시기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국세청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는 그 소득전산자료를 같이 공유하면 이게 훨씬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회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두 번 제출하다가 열두 번 제출하니까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세무대리인이 일반적으로 근로자 급여자료를 이미 월별로 관리 중입니다. 전산으로. 그러니까 그 전산 프로그램을 간이지급명세서로 자동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 제출하던 걸 열두 번 제출하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무사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증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 비용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가하면. 그래서 그렇게 보전을 해 주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산세 부과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정부가 보완을 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왜 필요하나, 상용근로자는 매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용근로자도 직업이 두 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장이 폐쇄되면 중간에 상용근로자가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연말에 두 번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상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자기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 고용보험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진선미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아까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조정해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도입 여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담당 국장

이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소득연계추진단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실무적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세무사회하고 국세청 그리고 고용부, 고용보험공단하고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도 나눠 봤는데요.

세무사회 말씀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상하반기 연 두 번 받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실시간 소득과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인프라 갖추는 데 활용하면 좀 더 편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공단하고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 봐야 어차피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고용보험공단 내에서 정산만 두 번 하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소위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가기 위한 실시간 소득과악에는 월별 자료를 받아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6개월마다 하는 것은 내부 행정비용만 더 늘어나고 크게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그런 쪽으로 세무사회하고도 실무적으로 얘기는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납세협력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 것이 좀 확인되고 심사했다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용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자료 매월 보내잖아요. 그 전부 다 모으면, 지급명세서 중에 항목이 두세 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전부 다 모으면 지급명세서 두 번 받을 필요 없잖아요. 왜 받아야 되지요?

실무적으로 답변하세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상용근로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장 류성걸 매월 받으면 그 전부 썩 모으면, 연 1회 하던 것 EITC 때문에 2회 하게 됐는데 그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뭐 때문에 받아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간이지급명세서가 1년에 두 번 내던 것을……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잖아요, 개정안에. 그럴 것 같으면 지급명세서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앞에 항목만 두세 개 바뀌면 그대로 되니까 전부 다 모으면 지급명세서가 되지 않습니까. 간이지급명세서 6개월 치 모으면 반기가 되고 또 6개월 치 다 모으면 1년 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항목이……

어쨌든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김정호 의원님 안도 2020년 7월 31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들을, 또 아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 하면 제출을 안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예요.

김상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고용부 실장님, 이게 제출대상 소득증빙에 대해 가지고 반기 1회 제출하던 것도 매월 제출하고, 그 이유가 전 국민 고용보험체계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과약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정부안의 기본취지인 것 같은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 안에는 전 국민이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몇 개의 특수고용직업·직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로드맵인가요, 아니면 전 국민이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김성호 기본적으로 모든 취업자를 커버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요. 지금 저희가 상용근로자하고 일용근로자 그리고 일부 상당 부분의 특수형태근로자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분들하고 자영업자분들이 남아 있는데 20년도에 나온 로드맵을 보면 특히 자영업자 부분들은 별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서 가는 겁니다.

○김상훈 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칭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지만 사실상 가입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점, 갈등도 노정돼 있고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 아니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배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보험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특고 형태의 사람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걸 전 국민이라고 명칭을 댄 것뿐이지 사실상은 전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따져 보면 전 국민 고용보험체계를 대비해서 실시간 소득과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전에 반기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매월 소득증빙을 하도록 한다, 이것도 좀 무리수는 있어 보인다, 전 국민 고용보험체계가 사실상 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몇 개의 특고 형태의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그 로드맵을 대비해서 실시간 소득과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월 증빙이 필요하다, 이게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만약에 정부안을 채택한다면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완방안들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득과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물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큰 로드맵을 보완하는 기초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초기를 돌아봤을 때 실시간 소득과약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누가 소득이 줄었는가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소모적인 논쟁들을 했던 것만 되돌아봐도 실시간 소득과약 시스템을 최대한 전 국민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은 비용을 감안해도 편익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돼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소득과악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월 해촉증명서를 연말마다 제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협력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서 이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전 국민 고용보험도 물론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이후에 더 확대하는 과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모든 게 앞으로 복지시스템을 갖추려면 실시간 통합 소득과악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다만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 보려고 했던 건데 계속 안 됐던 사안인데 이것을 국세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나 이런 의문은 좀 갖고 있고요. 약간의 납세협력비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알고 사실 이 납세비용에 대해서는 전국민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그동안 쪽 검토를 해 왔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사실과악이 된다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다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좀 문제도 있고 허점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세액공제 또는 가산세 유예 등에 대한 구체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잠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만약에 매달 소득과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과태료 부과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닙니다. 가산세를 유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경숙 위원 가산세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유예합니다.

○양경숙 위원 저는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설령 강연자라든지 판매원 이런 사람들한테 소득, 얼마 수입 있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신고해라, 이렇게 했을 때 조세 저항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 편의주의가 너무 횡행하지 않나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임시고용직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신고를 했었는데 매달 매달 신고를 해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게 얼마큼 입법예고나 안내가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그동안 안 했던 신고를 매달 매달 하라는 거냐, 도대체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많은 저항과 항의가 따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맞는 방향인 것 같기는 한데 2024년부터 1년 정도 있다가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용시기라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세액공제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박홍근 의원안하고 김주영 의원안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회에서도 세액공제 신설 개정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납세협력비용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인센티브로서 세액공제 말씀을 하셨고 또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하게 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08쪽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정비와 특례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입법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상용근로소득은 6개월이고 개정안은 이것을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3개월 후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경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만 미제출 가산세를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안을 앞에서 논의하셨기 때문에 그걸 매월 제출하게 한다고 하면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도 가산세를 50% 경감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제출 가산세의 한시적 특례라는 것은 이렇게 매월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이 아닌 기존대로 반기별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제출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또는 2024년 1년간은 기존대로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미한 불분명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출하지 않은 내용이 5% 미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매달 제출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는데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매월 제출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산세를 좀 낮추는 방안이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도입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부담은 적게 하면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12쪽 개정안도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13쪽 검토의견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편의 제고 차원에서 연 1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해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도 상용근로소득은 매월 제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용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 달리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각종 공제 관련 정보들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지급명세서의 차이가 일부 총지급액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연말정산 공제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똑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것도 역시 지급

명세서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14쪽입니다.

개정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시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것도 역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납세 협력비용에 관련해서 과도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에 정리해서 전체 같이 의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년간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고 금융시장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최근 주요국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루나·테라 사태 등을 통한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55.2조 원으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1%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31조 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FTX 파산 사태

등으로 인해서 더 불안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및 납세순응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같이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 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도 주식 즉 금융투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의 신뢰성 제고 및 수평적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연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조속한 과세를 통해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고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최초에 2022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정비 및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으로 시행일이 연기되었고 개정안에 따르면 다시 2년 추가로 유예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사행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뇌물 등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평적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지금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법인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고 수리 사업자가—거래소지요—21년 11월에 6개였던 것이 21년 말에 29개가 되고 2022년 현재 10월에 보면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면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안내를 추가로 진행하고 잔여되는 기술적 쟁점도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사실 이걸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무위에서 이 관련되는 법률 14개가 제출이 돼서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검토의견은 금투세와 동일한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투세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기초자산 자체가, 내재가치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무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가상자산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정 아직 안 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이걸 시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여쭙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을 금투소득으로 볼까, 기타소득으로 볼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타소득입니다.

○장혜영 위원 기타소득으로 볼까?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해서 기본법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언급은 있으신데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밝히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과세를 유예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된 건 이미 수년이 지났고 앞서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이 코스피시장 수준에 이르기도 했었어

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2년간 또다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형평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은 지난 정부의 기재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기재부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2021년에 여러 차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굉장히 여러 번 밝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게 조세원칙인데 그간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해서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서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술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둘 중의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돼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는 저는 전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의 입장이지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투자자 보호는 원래 과세의 전제조건도 아니고 상금이나 복권이나 심지어 뇌물같이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이건 원칙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되어서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장혜영 위원……

○소위원장 류성걸 예,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쭉 논의가 되면서 사실은 21년 말에 국세청의 전산시스템도 구축이 완료가 됐고 또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은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규모가 21년 당시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크게 바뀌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대로 신고된 거래소가 5개,

6개였던 것이 지금 급속하게 한 6배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완료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말 상황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같은 것도 사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화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세하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그 두 가지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저도 2년 유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22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하고 그랬다가 또 1년 연기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과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렇잖아요? 지금 최대 하락폭이 73%,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이 없으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작년에 손실이 큰 사람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안 냅니다.

○홍영표 위원 안 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홍영표 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불황기에도 주식에 투자해서 또 거기서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금투세도 하자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요. 손해 봤으면 세금 안 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 문제가 경기하고는……

○홍영표 위원 아예 안 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홍영표 위원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그게 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세하는 것은……

하여튼 저는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발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익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년이나 연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저는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이미 제출을 진작에 해 놓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인데요.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등락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삼십 대가 육칠십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지요. 소득이 많이 나면 과세를 당연히 많이 해야지요. 그게 공평과세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되는 주식시장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아예 없어서 이게 합법적인 공간이 되고 있지 못한 듯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거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에 관한 법 하나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여야가 계속 같이 법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합의를 해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즉시 수익이 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지금 찬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난번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시장상황의 차이, 두 번째는 법 관련된 사항, 지금 14개 법률안이 정무위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련되는 사항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된 제도, 그다음 세 번

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도입을 해서 바로 하려고 하면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래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몇 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딱 해서 지금 상황이 지난번 상황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진선미 위원 추가로 저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데요, 자료.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세요.

○진선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법인의 경우는 과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이 현재 취득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조세 과세규모, 이것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같이 갈아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사항은 보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관련된……

○김상훈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김상훈 위원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해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걸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밝혔듯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그걸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사실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실명확인제도라든가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용자 자산 보호라든가 또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야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과세를 당하는 분을 안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인 완비가, 법적인 완비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법안 관련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더 필요하면 더 해서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답변에 대해서요.

○소위원장 류성걸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장혜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에 있어서 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사실은 법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정리가 돼야……

○장혜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미비한 상태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3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만든, 그 결정을 내린 기재부와 국회가 미비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출발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잘 된다고 하던 지금 준비가 미비하다는 건데 그러면 미비한 상태로 이걸 가겠다는 거였던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가 드린 말씀은……

○김상훈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준비가 미비했다기보다는 올해 가상자산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올해 손실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올해 손실은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손실 보고 만약에 내년에 이익을 봤을 때 내년 이익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 올해 손실 본 것과 이익 본 것을 보면 자기는 실제 이익은 없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면 내년 이익은 다 과세되거든요. 현재 그것 때문에, 올해 시장이 워낙 꺼졌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내년 이익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그게 이익 보라는 법이 있냐고.

○장혜영 위원 그러면 기술적이고 법적인 미비는 없다는 얘기네요. 시황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이 준비 얘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에요, 그건.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고, 제가 아까 큰 틀에서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잠깐만요, 유보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논리가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고 실장님, 이것 논의할 때 계셨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제가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 과세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제가 이 제도를 설계했고 만들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고용진 위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년 그나마 또 유예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래서 올해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외 대형거래소가 과산을 했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불공정거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거래자들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보니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폭락을 하니깐 그러면 이것 올해 하면 좀 힘들겠다,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하자 하는 거고요.

시장이 폭락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한 이유가 뭐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100% 모두 손실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처럼 손실 나는 사람들한테까지 부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면 모든 법을 다 조정할

겁니까?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면 모든 법을 다 조정할 겁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해 주십시오.

1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비거주자,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서 금융시장 불안 등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거주자 등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 탄력세율, 즉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을 영구적으로 비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7일에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및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214조 원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국채는 164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유도하여 국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됨으로써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한 한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WGBI 편입국 23개국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환율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개정안에 따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비과세가 환율의 추가적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기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금 개정안과 똑같이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자·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었

습니다. 그 이후 2010년도에 외국인의 국채 보유잔액이 증가하고 급격한 외환 유입으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만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안대로 이 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기존의 탄력세율 적용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잘 아시는 것처럼 국채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과거 08년, 09년도 때처럼 환율의 영향 때문에 다시 위드드로(withdraw)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국채시장 규모가 한 300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외국인 원화채 보유잔액도 많이 늘어났고요.

비과세로 인해서 추가 유입되는 자금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변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외순자산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은 강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중부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자기들이 40%를 한꺼번에 내려 놓고 그다음에 중부세 개정하자고 그러고 말야. 이것도 뭐 한 달 있으면 될 사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탄력세율도 자기들이 0%로 시

행령 개정해서 내린 거 아니냐고. 그래 놓고 나서 뒤늦게 또 거꾸로 법 개정하자고 그러고.

법부터 개정하고 안 되면 그 방향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무슨 시행령 통치를 하는지 맨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안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저희가 9월 말에 WGBI의 위치리스트에 등재가 되니까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WGBI에 정식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령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투자액이 늘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투자액은 늘어납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WGBI 추종 자금이 전체 2.5조 불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편입이 되면 저희 국채가 자동으로 인덱스 펀드 하는 것처럼 쭉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들어간 게 한 오륙십조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장혜영 위원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있어요. 그런 말씀의 근거가 부족하고 그렇게 인덱스,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역시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변수가 더 크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펀드들 구조가 지수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채권상품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WGBI하고 별개로 움직인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채시장이 외국자본하고 연결성이 높아져서 변동성이 높아질 우려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채이자 0.5에서 1.1조 정

도 절감될 거라는 분석을 한다면 이 관련된 분석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국채투자자로 인해서 이자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통한 세수손실에 대한 추정치라도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지금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이유가 국채투자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미국이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펴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 폭락하고 있고, 자금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이득이 나니까 가는 거지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고환율이면, 당연히 고환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가상시장의 폭락, 이게 다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국채시장에 무슨 세금을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과세를 하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로 외국인투자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진단하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대지 않으면 이렇게 뒷북 행정, 설령 비과세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가기 전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응을 정부가 전혀 못 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요.

○소위원장 류성길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인과관계는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채가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의 선결조건이 WGBI에 편입을 하는 거고 WGBI에 편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비과세 조건이기 때문에 도입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드린 말씀에 혹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국고국장이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소위원장 류성길 일단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

시고.

○김상훈 위원 그렇게 크게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배부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세계국채지수 편입국은 지금 현재 예외 없이 국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는 국채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해야 될 나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방향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다만 몇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고 그래서 비과세 방향으로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용진 위원 국장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양경숙 위원 내년엔 국채발행 얼마나 하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상세한 설명은 국고국장……

○소위원장 류성길 국고국장,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좀 설명을 하시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국고국 유형철 국장입니다.

장혜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어떤 페이퍼 같은 것, 그런 데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20년에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WGBI에 가입했을 때 외국인 국채투자가 50조~60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입된다, 이런 자료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근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환율이 한 11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반영하고 또 지금 바뀐 금융시장을 반영해 가지고 최근에 골드만삭스하고 KB증권, 하이투자증권에서 60조~90조 정도의 국채투자가 유입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고채 이자비용 절감도 조세연구원에서 모형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연간 0.5조~1.1조 정도가 절감된다, 이러한 논문들, 페이퍼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시장이, 채권시장이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커짐으

로 인해서 안정화되는 금융시장의 특성,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내년도 국채발행은 167.8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과세를 안 해서 우리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구조 때문에, 시장상황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 9월에 마이너스값을 보이긴 보였지만 22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들어오던 물량이 줄어든다 그런 개념이지 지금 채권시장에서 많이, 크게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려할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렇다면 굳이 비과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앞으로 이런 논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를 다 미리 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사전적으로 좀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또 나올 수 있다고 예견을 하면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렇지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지난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를 적용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거는 사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가 돼야 되는 거라서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WGBI 편입을 위해서는 실제로 정부에서 조치한 사항이 필요한 것들이고, 저희가 빠르면 내년 3월에 WGBI 편입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좀 빨리 움직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에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던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변동이 그닥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자금이 유출될까 봐 우려가 되고 또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이거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나 근거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한 느낌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시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새 4배 정도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국채를 다 국내에서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국채발행은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지난 몇 년간에 커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채발행은 계속될 거고 그러면 국내에서 다 그걸 할 수가 없으면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커져야 저희의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이득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제도적인 큰 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WGBI에 가입을 하려는 것이고 WGBI에 가입하는 데 비과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GBI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을 좀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더 주시고……

○진선미 위원 예, 자료……

○양경숙 위원 예, 자료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를 더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항목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투자자가 펀드 등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 펀드가 해외에 대해 투자했을 때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다시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배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한 투자 시 펀드소득은 외국에서의 세전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를 외국법인세액 납부 후의 세후가격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투자자의 펀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확정신고 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현행과 같이 세전가격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펀드나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과 동 세액 납부 전의 소득이 계산돼야 하는데 펀드의 특성

상 복수 국가 및 자산에 분산 투자되고 그다음에 투자자 변동이나 투자자산의 배당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펀드의 성격상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하기 위한 세전 기준가격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후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현재 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만 별도로 다른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구별을 해서 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의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국내 세율이 외국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넘버Ⅱ라고 쓴 게 현행입니다. 해외에서 100이라는 배당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외국 세율이 10%라고 하면 10%를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시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이 과세표준을 세전으로, 10% 빠지기 전 100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전 과세표준이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의 배당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가정하면 14%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에 이미 10을 납부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4만큼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자의 경우에 외국에서 10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4를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4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Ⅲ에 보시면 개정안은 아까 해외 배당금 100 중에서 외국에 10을 납부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계산하는 과세표준을 세후 기준으로 해서 90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90을 했을 때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를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2.6이 됩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기존에 했던 원천징수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이라고 공식에 의해서 8.6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원천징수세액 4와 총부담세액 14가 같도록 맞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있는 것은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을 경우에, 즉 외국납부세액을 20%로 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현행 같은 경우에 세전으로 하기 때문에 20을 납부했다 할지라도 과세표준은 100으로 계산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4를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이미 외국에 20을 납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부담세액은 20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세후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이 외국에서 20을 내고 80이 되겠습니다. 80에 대해서 다시 14%를 가정하면 11.2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조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천징수는 전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총부담세액은 20이 됨으로써 현행과 똑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것은 계산의 편의성·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세후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되 기존 세전 기준가로 계산했을 때와 실제 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했을 때 동일한 원천징수세액과 총부담세액이 나오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법인투자자는 법인세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계산을 조정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전에 마지막 항목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26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기업이 외국인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사업장이 없다고 하면 직접 원천징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을 받는 사람이 그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인지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모두 소득지급자에게 실질귀속자 판단을 위한 자료보완 요구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은 실질귀속자나 국외투자자의 성실 협력의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고 정부안은 비거주자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안은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8페이지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밑의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보면 미국의 한 영화제작사가 헝가리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이전해서 국내에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국내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영화를 보고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소득이 기본적으로 헝가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헝가리와 국제 조세조약에 따라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헝가리에 지급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헝가리에 있는 사람이 실질귀속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에 조약상 보면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15%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질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실질귀속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안에서는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 당초 원천징수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게 되어서 납세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있고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 주신 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귀속자 확인을 위해서 현재는 거주자증명서만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법

인의 설립 사업, 국내 원천소득증명서 이런 것들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정성호 의원님 안에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한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좀 놓쳐서 그런데요.

국채시장이 8월, 9월까지의 정체가 내지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10월부터거든요. 레고랜드 사태, 국내 채권시장은 그렇고 해외에서 홍콩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나중에 갚기로 하기는 했지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2009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국제신용도가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래서 내년 국채발행계획 대비 전망, 외국인투자전망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2022년도에 국채발행 대비 소비현황, 발행조건도 좀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9월, 10월에 국채발행 조건과 국채발행을 했을 때 소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인지 그리고 외국인투자는 몇 %, 얼마를 소화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양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고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저도 아까 자료요구를 좀 두루뭉술하게 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19페이지 18번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해서 개정 세수효과가 2023

년에 -1억, 3년부터 7년까지 -5억 이렇게 추계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영세율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세수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지 추정치를 받아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세법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를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후부터는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첫 심사할 사항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31쪽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년 유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주요국의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통로인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의 정비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2년 유예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2022년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2년 유예는 향후 2년간 국내 자금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현행 금융세제보다 세수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 유예를 통해서 향후 2년간 금융자산 관련 세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실제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등의 실무적인 준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시스템 완비가 전체 48개 업체 중에서 곤란한 업체가 7개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23년,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공표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2년 유예할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2년 유예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관련 업계의 많은 업체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세액산출, 납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공백 문제 그다음에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는 등 당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보완하려던 현재의 금융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24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부는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해서 보유주식비율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시행령에서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그다음에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사항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정사항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는 현재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 또 투자자의 보호장치도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2년 유예하는 정부 원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이 있다는 것은, 국회 청원이 지금 한 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금융투자세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과 또 최근에 은행연합회나 금투협회에서도 2년간 유예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에도 아직 조금 미비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도입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김상훈 위원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부분은 정부 측의 2년 유예안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년 유예에 대한 조건부 합의안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는 양당 간사 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혜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진행방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의사진행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소위에서 관련된 소관 법률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에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어제는 전부 공개 회의로 진행을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언론인들이 배석하지 않는 방식의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토론의 의미이고 그런데 토론은 토론대로 하지만 결론은 결국에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양당 간사 합의, 소소위를 통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토론이 어떤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진척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두지 않은 상태로 일단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소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소위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을 잘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2년 유예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관련해서 차관님께 세 가지를 여쭙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검토의견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취지 같은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하는 것 또는 그 반대로 유예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떤 상황인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금투세를 유예하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유예 방안이 검토가 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이대로 가서 예정대로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막자 하는 차원의 유예 취지인지 하나하고.

세 번째, 관련 업체 48개 중에 41개가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유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인데, 주로 증권사들은 거의 완비했고 은행들이 일부가 불완전한 상태인데 증권사·은행 같은 관련 업체들 의견은 어떤지, 대부분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하는 쪽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유예하게 되면 곤란하다, 예정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 그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 의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과세대상이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또 상장주식 세 부담도 1.5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21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 30% 정도 폭락을 한 상황이라서 거래대금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시장에 굉장히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도 조금 유예를 해 달라는 청원을 한 5만 명 가까이 국회 기재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투자자들의 의견은 거기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제도를 유예함으로써 활성화까지 기여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아직 강한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일단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일단 유예를 하고요.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그 시점이나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도입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의견은 이미 전문위원이 냈습니다만 시스템의 완비가 어려운 게,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행 중에는 정상 추진이 한 10개, 구축에 애로를 갖고 있는 곳이 한 6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아직 구축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이것을 한 2년 정도 유예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대로 하면 서른……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증권사는 상당히 준비돼 있는 편입니다.

○조해진 위원 거의 대부분이 준비된 상태인데 준비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 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언제든지 도입하더라도, 시행하더라도 맞춰 갈 준비는 돼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좀 유예하는 게 낫겠다는 입장인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금투협회에서는 아직도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들을 들어서 유예를 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고용진 위원 금투협회가 여러 개예요?

○신동근 위원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도 금투협회에서 받은 얘기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에서는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10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의 도입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현재의 시행령으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증권거래세 폐지나 축소 부분은 거론을 안 해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까? 왜 금투세만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흑세무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권거래세는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데 10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금 보니까 증권거래세가 2021년에 10조 2556억이 걷혔어요. 2022년 본예산은 7조 5380억 예산을 잡았는데 2022년 9월 말 현재 5조 1000억이 증권거래세로 걷혔습니다. 2023년 증권거래세 예산안은 4조 9739억인데 64%가 손실 난, 손해를 본 증권거래자들이 납부했다는 보고와 연구도 있습니다.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수조씩 걷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합리하니까 당연히 폐지하거나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야 합의까지 했는데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세금 많이 내서 세수를 충당시켜 주니까 그거 아까워요?

부자들한테는 수조씩 법인세 감면안 제출하면서, 종부세 축소시켜 주면서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손실 난, 그것도 손해를 많이 본 투자자들이 내는 수조 원의 세금은 고스란히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개미투자자들에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이익이 되는 것인양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흑세무민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 부분은 설명 안 합니까? 그 부분이 전제인데 왜 그 부분을 강조 안 해요?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증권거래세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금 0.15% 이하는 농특세거든요. 그래서 농특세를 폐지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0%까지 낮출 수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양경숙 위원 코스피 부분부터…… 코스피는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건 코스닥 부분이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하는 것이……

○양경숙 위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왜 설명 안 하고 가장 적은 지엽 말단적인 부분만 강조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만약에 다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액 투자자들에게, 개미들한테 꼭 유리하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단타 매매가 더 빈발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개미들한테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 개미들만 더 손해 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꼭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증권거래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보다는 일정 수준 존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추경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된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2019년에 제출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기재부장관이 얼마나 됐다고 몇 달 전에 했던 말을 다 뒤집고 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줌.

○소위원장 류성걸 논의를 좀 더 좁혀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법률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해서 선도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된 2020년도의 시장상황하고 2022년 11월 현재의 시장상황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코스피지수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이어가던 때이고 지금은 주식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고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0년 말에 18조 2000억, 그런데 지난 달에 7조 6000억, 58%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식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는 감세조치 또는 유예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법 도입 당시에 23년도 1월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요구로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논의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전제조건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필요성, 그게 뭐냐 짚어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대주주들 회피물량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

다는 게 저는 기재부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김상훈 위원 금투세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투세는 어쨌든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세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금리·고물가·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금투세를 이유 막론하고 원래 정해진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과세대상자들의 기대와 시선을 뿌리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대주주 요건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

○홍영표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을 합산해서 이익에만 과세하겠다는, 합산 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공제하겠다는, 이게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지금 시행을 한 달 반 앞두고 투자자들이 금투세법 유예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나쁘니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준비상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국회에서 이런 논의 하는 것 자체에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회를 뿔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우선 물어볼게요.

거래세는 주식거래를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내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양도세는 반대지요? 내가 손해를 보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홍영표 위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왜곡을 어떻게 하고 있나, 투자자들이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3만 명?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5만 명.

○홍영표 위원 이런 기사는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이나 실장님은 좋은 것만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10월에 나온 뉴스예요. 이데일리 기사인데, 와이스트릿이라는 유튜브 지식·경제 채널이 있어요. 상금 2500만 원을 내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청원 동의 캠페인을 벌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원에 참여하면 25명 뽑아서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슈퍼개미가 사비로 ‘내가 캠페인 하겠다’ 그리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보면 슈퍼개미가 뒤통을 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의견만 얘기하잖아요.

슈퍼개미가 주식시장에서 통상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슈퍼개미 하면 제가 알기로 주식자산으로는 한 30억 이상 그리고 1인당 평균자산으로 보면 한 200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이 사람들 편을 들어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직접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140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것 맞잖아요. 슈퍼개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안 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말씀하신 건 슈퍼개미뿐만 아니라……

○홍영표 위원 주식양도세를 유예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그러니까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슈퍼개미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혜택은 본다고 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1400만 이런…… 이따위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정말.

지금 주식시장에서 30억 이상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입니까, 이런 슈퍼개미들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것은 제가……

○**홍영표 위원** 그 사람들이 뒤에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호도하고 있잖아요. 일반 개미들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주식시장이 나빠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법을 2020년에 처음 여야가 합의했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렇게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이 돈까지 걸어 놓고 조세저항운동을 벌이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똑바른 정보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나머지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이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거래세를 안 내니까.

아까 농특세 얘기했지요? 정말 그렇게 걱정한다면 농특세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예산으로 하세요. 그리고 거래세 없애겠다는 것을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 언제 한 말인데 지금 와서 말을 바꿔 가지고 말이지요,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련 업체 준비상황을 저도 물어봤어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거의 100억씩 들어갔답니다. 100억씩 들어간 회사들은 앞으로 2년 유예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못 쓴답니다. 정부가 그것 물어줄 겁니까? 우리 국회가 물어줄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조세소위에서 이것 통과 못 시켜요. 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해 주십시오.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20년도에 이것 도입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경제상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평

강히 낮아서 연초하고 연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리가 1.25에서 한 0.5로 떨어져 가지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35% 정도가 올랐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사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황이었던 측면이고요. 그게 쭉 이어 오면서 21년도에 굉장히 정점을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21년 말쯤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금리인상을 통해 가지고 급격히 금융시장이 악화되고 냉각이 되는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간 유예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건강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려는 마당인데, 제가 우선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손실 과세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잡는 등의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또 투자자의 여러 가지 손익,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음에도 이익 보는 것에만 과세하는 이런 것에 대해 손익통산을 해야 된다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이렇게 한 법안임에는 맞지요?

차관님, 법안의 시기 말고 우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닙니다.

○**고용진 위원** 이의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경제 및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 번째.

그다음에 약 5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청원이 존재하듯이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런 거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산화 부분에 있어서 미비하다 이거지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이렇게 세 가지이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근본적으로는 사실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고용진 위원 제일 큰 건 그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고용진 위원 주식 전산 문제는 은행 쪽만 미비하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돼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한번 우리가 짚어 보시자고요. 지금 이 얘기가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와 여야가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자꾸 유예하는 게 좋은 선례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꾸 입법부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차관님이 그 당시의 증시상황은 굉장히 좋았다, 지금은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법안을 다루면서 지금 증시상황이 좋으니까 지금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적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증권시장, 증시상황과 관련해서 법안을 연계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증시가 좋으니까 이 법안을 진행해야 되고 증시가 안 좋으면 진행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법안에? 그런 적이 없어요. 우선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투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증권거래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금융투자세를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유예하면 증시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가.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합니까, 안 합니까?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증권거래세가 낮춰지면, 0.23에서 쪽 내려가서 0.15까지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상황 빼고 증권거래세가 낮춰지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한다,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 기여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러면 이 금투세법에는 증시 활

성화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우선.

두 번째,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써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답을 하셨는데 주식 양도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지금 우려는 소위 큰손들, 슈퍼개미들이 증시를 이탈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증시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과거에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 주식양도세 도입이 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트라이를 했었는데 사실 두 번 다 실패를 하고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철회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진 위원 대만 사례를 드시는데 이미 그것은 여야 간 공히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거기의 상황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반발이 컸던 것으로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실 해외 연구자료를 봐도 여러 가지 연구자료가 양도소득세가 되면 거래량도 감소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저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안 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주주들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잖아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슈퍼개미들이 갖고 있는 포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거의 모두가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가, 그걸 주장하는 일부 청원을 주도하는 분들 외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동안 입법을 주도해 왔던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될 판이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논의하자고 그러면 그런저런 우려 때문에 약간 미룰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다 만들어져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유예하자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제1번,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든가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그냥 설이예요, 설. 그럴 것이다……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투자자가 이걸 주장하고 있다, 그 실체도 굉장히 모호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슨 후원 내지는 참여 독려하는 세력들도 있고 전체 투자자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지만 흔히 1400만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1400만 개미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여론조사라도 해 보셨어요? 의견을 다 수렴해 보셨냐고. 그것도 아니예요. 지금 목소리 큰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예요.

저는 이게 조해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논의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했던 것이고, 정말 현존하고 앞으로 닥칠 것 같은 분명한 위협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유예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증권거래세를 인하고 여러 가지 관련 손익통산을 하고 이러한 세제 선진화 방향이 너무나 오랫동안 말만 되어 오다가 번번이 그런 저항에 부딪혀서 깨졌었는데, 지금뿐 아니예요. 과거에도 계속 깨졌던 거예요. 겨우 된 것을 이제 와서 유예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재부가 그간의 주장을 어디론가 숨겨 버리고 변심해 버리고 비겁하게 숨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다 귀담아듣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그런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식거래세가 낮춰질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일각에서는 주식거래세를 낮춰도 결국은 수익률만 올라가지 수요 자체는 안 올라간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100% 그것이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개미에게 영향이 있어서 증시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전에 우리가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한번 낮추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3억 원 이상 보유자 수를 9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지금 10억 기준이 1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15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 충격을 이유로 유예를 하고 10억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만 명보다는 15만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지금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금투세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도입을 하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좋은 약도 때에 따라서 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금투세는 저희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제도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굉장히 정치하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 법률개정안 사항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몇 가지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도 금융사 시스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입니다.

나머지 채권상황에 대한 금투세 양도 정의를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정·확정 신고 간소화 문제 또 시행령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완을 하고 나서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 조금 더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금투협회는 좀 다르지만 은행연합회는 확실하게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상황이라든지 또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년 정도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차관님, 금투세 도입하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걱정한 시기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면 저랑 좀 증시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슈퍼개미하고 그냥 개미하고 전혀 판살림 차리고 별개의 사람처럼, 별개의 생물처럼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증시라는 것은 사람의 몸처럼 하나의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이 있는데 얼굴만 좀 튼실하다고 그래서 얼굴에서 피를 많이 뺀다고 하면, 그러면 몸이 전체 흔들려 가지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슈퍼개미들한테 징벌적으로 많이 먹인다고 해서 속으로는 고소해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본인들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했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금투세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법이 통과돼 가지고 증시가 폭락을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부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른바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경제상황이 악화될 텐데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들을 때 그 임대차 3법이 참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지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약도 투약하거나 먹을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그러면 소용이 없거나 결국은 큰 해악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 1% 되는 초부자들에게 징벌적인 과세의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 주택 보유자의 8%가 넘습니다. 이게 종부세입니까? 그냥 보편세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렇듯 정책에 어떤 선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금투세 도입할 때는 우리가 금리인하 시기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고 한미 금리가 역전됐어요. 주식시장도 예전에 3300까지 올랐지만 이제 겨우 2400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전망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꼭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지, 그것을 우리 국회와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증권거래세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물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금투세를 시행할지 늦출지 이것을 독립적으로 먼저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다른 문제들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부 언론에 보니까 1조 원 정도 세수가 마이너스된다고 그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1.1조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해야 되고 감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또 주고받는 조건처럼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했으면 신념과 의지를 갖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말하자면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두 개가 폐지되는 거예요.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폭 인하되는 거지요.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없어지는……

그런데 마치 세금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증세냐 감세냐의 논쟁은 아니고 아까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 조세정의 그리고 공평성 그다음에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금융과세 세법을 말하자면 합리화시키는 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반대하는 분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당신들도 그전에 여야 합의를 해서 찬성해서 다 도장 찍어서, 누가 그것 시킨 것도 아닐 텐데……

이게 하나는 안철수 의원처럼 뭘 잘 모르는 분들은 악법이라고 그래요. 악법이면 폐지해야지 왜 유예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상황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금투세 도입의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손실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손실을 유예시켜 주는 거고.

지금은 해외투자자와 국내주식투자가 합산이, 통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삼성전자에다가 4000만 원을 넣어서 4000만 원 손실을 보고 애플에다가 2000만 원을 넣어 가지고 2000만 원 이익을 봤는데 통산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손실 본 건 하나도 계산을 못 받고 이익 본 걸로 해서 385만 원 소득세 냅니다. 세금 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꼬박꼬박 따로 또 내요.

다시 말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는, 말 그대로 아주 나쁜 법이지요. 지금 현재의 법이 악법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었고 전산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래세에다 꼬박꼬박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위 털 뽕듯이 10조씩 걷어 낸 것 아닙니까? 기재부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정부나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는 이것 폐지하기 싫어한 거고. 그것도 증권사에서 그냥 걷어 가지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식양도세 폐지는 둘째치고 금투세가 되면 폐지되는 건데 이걸 왜 20년 전으로 돌립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도 20년 전으로 돌리고 무슨 세제도 무조건 20년 전으

로 돌려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상관없이 뚜벅뚜벅 100억에서 줄여 온 겁니다, 10억으로. 그런데 일시에 또 100억으로 올려요? 100억하고 10억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백팔십몇 명 되더라고. 맞춤형입니까? 상속·증여세도 6.3% 하니까 확대되는 곳이 313곳이던데 그런 사람들 무슨 청부입법했어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됐다는데 이거 기재부가 9월인가 8월에 이 법 내면서 시장상황이 혼란스러워진 거 아닙니까? 이미 2년 전에 다 하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되는 걸로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국세청이 홍보비를 올해 4억 4000만 원 했는데 2억 3000밖에 안 썼더라고요. 도중에 중단된 거지, 홍보도 안 한 거지.

그리고 금투협회, 아까 거짓말하더라고. 금투협회도 기재부가,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할 뿐이지 아까 홍영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형 증권사는 한 군데당 100억씩 매물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다 시행하기를 원해요, 소형 증권사 빼고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장상황이 좋아져야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큰 영향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시장상황을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상승장에는 이거 도입하면 상승 꺾인다고 난리를 칠 거고요 고점에는 돈 많이 버니까 너나 없이 다 5000만 원 이상 번다고, 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세금 낼 거라고, 실제로 지금 상승장에도 평가해 보면 0.9%밖에 안 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면. 결국은 올해 유예하면 안겠다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는 못 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당에서 절충안을 냈어요. 좋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면 유예하겠단, 대신에 주식양도세를 갖다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대주주 기준.

○신동근 위원 대주주 요건을 갖다가 10억을 100억으로 하겠다는 걸 따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뒤라, 무슨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걸 5억이나 1억으로 더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

아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이번에 도입하기로 원래 0.15%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정된 만큼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는데 주식양도세 기준은 그대로 뒀지요. 증권거래세 폐지되거나 대폭 인하되니까 주식시장에 좋지요. 유예시켜 주니까 좋지요. 그거 왜 못 받아 이거야.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거위 털 뽕듯이 뽑는 증권거래세를 포기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유를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도 안 들릴 거고, 세금 포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한 1조 정도 세수가 구멍이 난다치고, 그런데 법인세 이런 데서 4조, 6조, 그만큼 인하가 되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렇게까지 시장상황을 걱정하면 말이에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투자자들의 일부가 이렇게 반발을 할까, 그리고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지요. 하나는 너나 없이 0.9%밖에 안 되더라도 나도 그 안에 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연히 주식이 폭락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하락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작년에 국채 매입이 평균 4조 정도 되는데 최근에 11월까지 16조가 매입됐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다 차익 노리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100억, 1000억씩 벌어도 돈 한 톨도 안 낼 거라고, 세금. 이게 조세정의에 맞는 겁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양보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투자자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유예해 준 데다가 증권거래세까지 깎아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받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재부장관 입장이 그러신데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

면 그대로 가는 거지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우리 국민들 삶과 특히 서민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한 서민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실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지 또 과거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어땠는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민간에서도 이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에서는 어땠는가, 보통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 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일본도 있고 또 아까 대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스템 정비라든지 준비상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되려면 금융기관이 전부 다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게 파생상품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 금융투자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개는 되고 또 몇 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지적인 동시에 안을 우리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신동근 간사님께서 아까 양보안이다, 아니면 절충안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해 보십시오. 회의 때 우리 장관이 준비가 평소에도 되어 있겠지만, 아주 철저히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신동근 간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에서 100억으로

하는…… 그다음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사항과 또 증권거래세 0.23에서 0.20으로 갔다가 0.15로 가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이 금융투자소득세하고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소위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외부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또 준비하실 사항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세수효과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이번에 정부안이 0.2로 낮추는 건데요 세수효과가 2023년에 70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0.15로 낮추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안으로 따지면 1조 8000억 정도 해서 정부안 대비 1조 1000억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하면 1조 8000억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너무 큼니다, 세수감 효과.

그래서 원래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서 0.15%로 가려고 했는데 금투세를 2년 연기를 하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선에서 고민을 하다가 0.23%를 0.2%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을 할 때 0.15%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의 상황이나 운용상황을 봤을 때라는 측면이고요.

100억 문제는 하여튼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100억 말씀을 하셨으니까, 100억은 우리가 정식으로 표현하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줄여서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차관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실 겁니까, 최종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최종적으로는……

○소위원장 류성걸 최종은 폐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투자소득세로, 물론 그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금 관련해서 배당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중국적으로 폐지를 한다, 또 조금 전에 세제실장님 말씀하셨던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이게 최종 목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이 2019년인지 2022년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2019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처음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이렇게 여러모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 제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았으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요.

시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시황이 백 년, 천년 오르기만 할 거다, 계속 좋기만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집어넣자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도입 취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논의가 되고 도입이 됐고 조세연이랑 자본시장연구원이랑 다 공동 연구용역했고 그 결과가 이 금융투자소득세 방안이었잖아요.

그때 추경호 부총리, 유경준 의원님 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동의하셨고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황이 안 좋아서 못 한다? 좋으면 좋아서 못 한다고 하겠지요. 대주주 기준 3억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못 한 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님 계셨을 때지만 대주주 요건 낮추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투자자 반발로 못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세금은 어차피 도입을 못 해요. 다 반발하지 어떤 납세자들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데 두 손 들어서 환영하겠습니까? 플래카드를 걸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그래도 여러모로 성장을 했고 이 자본시장을 더 낮게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에 있어서 여야 다 합의를 하셨잖아요. 심지어 그 법 통과시킬 때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장님, 김상훈 위원님 다 찬성하셨어요. 저는 기권했거든요. 왜 기권했냐 하면 당시에 정부 공청회의 원안은 공제금 2000이었고 손익통산 기간도 3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5000, 5년 이렇게 후퇴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후퇴에 대해서 이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기권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 부족을 자꾸 얘기해서 이걸 유예해야 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 2년 전에 통과가 됐는데 여태껏 준비를 못 했으면 그게 자랑입니까? 오히려 책을 잡아야지요. 바뀌 달라고 볼멘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은행 몇 곳 못 했다, 네 곳이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은행 어디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어느 은행이 국회의 제도 변화에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세청, 금융당국은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도 시행 준비를 안 해요? 금융감독을 안 합니까? 그걸 어떻게 유예해 달라고 하는 핑계로 들고 올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제실장님이 아까 펀드 분배금 얘기하시면서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 미비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모든 제도는 보완하면서 가는 겁니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조세소위에서 200개 넘게 논의하는데 그것들 다 처음부터 완벽한 거 아니었잖아요. 계속 개정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헌법도 개정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들지 못해서 유예해야 된다, 저는 이거 대단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치면서 가면 되지요.

그리고 시장에 불안이 있을수록 제도는 안정감

을 줘야지요. 매번 이렇게 제도 자체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 불신에 대한 비용은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제도에 대한 불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정권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이렇게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국민들이 뭘 믿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법안 이미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주도한 만큼 반드시 예정대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닙니다. 그냥 듣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와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예가 논의되려면 적어도…… 그리고 차관님이나 조세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단지 유예할 뿐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쭙볼게요. 지금 우리가 Q&A를 마련할 정도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팩트와 되게 다른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거나 아니면 실제와 다른 내용들이 청원 이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본래 모습에 대해 정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라도 혹시 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냈고요.

○진선미 위원 그거 언제 내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배포를 했었고요.

○진선미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입니다.

○진선미 위원 완화 필요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진선미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는데요. 실제로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하게 해 준다, 법인에게만 유리하게 해 준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 연말에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주주들이 전격 다 매도할 거다, 그렇게 하면 위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매도의 상황들도 지금까지 9년 동안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현상은 있지만 그것을 금방 다른 쪽에서 다 매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의 지수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게 거의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Q&A처럼 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는 아닙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들한테 다 보도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걸 이미 야당 보좌관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던 자료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담겨서 Q&A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질문을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언급과 관련해서 금리라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가 전달되지 않고 마치 공급의 문제처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1년 사이에 공급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이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안전성을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다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도 그게 시행되는 2023년에 어떤 상황일 거다, 그 당시처럼 호황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법을 도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보다 더 정확한 상황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관님이, 이 법이 발의된 건 9월 1일이고 아까 그 5만의 청원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는데 5만의 청원은 10월 12일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원의 과정 속에서 이 제도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돼서 마치 모든 개미투자자들에게 위험이 될 것처럼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들을 방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 상황들을 활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 ‘청원이 5만이나 있었다’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나 제도에 대한 정확도가 늘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론이 평가되고 이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차관님,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는 정부의 우려 자체를 의심하는 분은 저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별로 걱정도 안 하면서 걱정하는 척한다,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 걱정하는 척한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괜히 걱정한다, 그냥 해도 괜찮을 건데 너무 과장한다, 그리고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제도 시행에서 오는 거시적 이익이 더 낫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첫째는 개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예정대로 시행 들어갔을 때 국내의 큰손 투자자들, 큰손들이나 또 해외의 투자자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건지, 그래서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건지, 그것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도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급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동향이 지금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징후가 있는 것인지, 그런 실증적인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거기에 얹혀 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시나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실물 기업들, 저는 정부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의 문제가……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실물에 바로 영향이 갈 것으로 우려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염려가 되니까. 지금도 어쨌든 채권시장에 벌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본조달의 문제가 상당히 우려할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같이 생기게 되면 기업들도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지만 자본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 또는 앞으로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돼도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안 생길 것 같다, 또 생겨도 자기들이 기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지, 기업들도 똑같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더 정치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년도 도입 당시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호황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다만 21년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충격은 사실 그 당시에 전망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는 유례가 없는 사태였기 때문에.

그 이외에 금융시장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기는 이벤트, 국내에서 생기는 이벤트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서까지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인 거고요.

일례로 지금 금융업계에서도 보게 되면 올해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한미 금리역전 현상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에 해외주식이라든가 ETF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고 그게 또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율에 악영향이 되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하는, 연쇄적으로 반응할 거라는 걸 단적으로 예를 하시는 분들

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해외주식은 사실 국내보다도 세부담은 굉장히 높게 가지지만 거기에는 투자자 권익보장이란가 그런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많은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까지 가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투자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업들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의 금융시장에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기업의 실물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외환위기라든가 08년도의 금융위기를 봤을 때 사실 그건 금융시장에서만 움직였었던 거지 실물까지 영향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했었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시장 자체의 움직임, 대외적인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실물경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정책이 시행되면 결국은 기업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실물경제 악화까지 갈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한 번씩 의견을 개진하셨고 또 차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소위원장 류성걸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다음에 계속 하시지요.

○홍영표 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소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을 좀 요약해서……

○홍영표 위원 차관님이 경제상황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상황이 그렇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가 아주 높아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경제상황을 위기로, 추경호 부총리 표현으로 하면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에 일관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국에서 트러스라는 수상이 44일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러난 것에 대해서 왜 물러났느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감세하다가 물러났어요. 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가 폭락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철회하면서 수습이 됐는데, 저는 그렇다면 정부가 부자감세나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미·중 간의 이런 문제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전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문제 같은 것 하나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회사채 시장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서 지금 이 금투세 유예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고액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고액투자자들만 들어오는 시장입니까? 법인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있어요. 이 주식시장이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폭락하게 되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슈퍼개미 몇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만에서의 얘기를 했어요. 왜 일본 얘기는 안 합니까? 일본에서 자본이득세를 89년 4월에 도입할 때 니케이주가가 3만 159엔이었어요. 도입 후에 3만 8915엔으로 올랐어요.

기재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에서 몇 년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시행을 앞둔 법안을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이렇게 미뤄 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개인투자자에게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관님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관도 다 도입이 됩니다.

○홍영표 위원 이 말이 틀렸지요? 개인투자자들에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홍영표 위원 법인은 이미 사업손실을 손익통산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고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물어본 이런 Q&A는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동하는데 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걸 부추기듯이 하느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수혜자가 법인과 외국인입니까? 아까 2조 정도 증권거래세 부담을…… 내가 봤더니 22년 7월에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세 부담비중이 64%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21%, 15%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 인하하면 법인과 외국인만 수혜자다, 이런 잘못된 선동에 대해서 기재부가 왜 말을 안 해요? 말한 적 있어요?

그리고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세를 위한 겁니까? 직접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우선……

○홍영표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우리 입법부에서 통과한 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 드리고 설득도 하고, 이게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방치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동근 간사께서 대주주 기준과 거래세 완화하는 걸로 유예하자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도에 금투세가 도입될 당시에 이 정도의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 탈이 가시화될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금투세가 부자감세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해서 과세대상자가 무려 10배로 늘어난다는데 이게 부자감세일리는 만무하지요. 또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도 완화하니까 여러 가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더라는—최근에 한국계 교수인가요—그런 연구논문도 발표가 되고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소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시장상황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하면 돼. 주식시장 안 무너질 거야. 돈 안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지요. 자꾸 시장상황을 빌미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을 펼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시장상황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지요.

지금 누가 봐도 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 그런 위기인데, 또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가격이 고점 대비 30%나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지장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2020년도에 도입된 이 세금의 유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대주주 완화요건 10억에서 100억, 그것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협회의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물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재검토한 안을 갖고도 더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 결정을 디테일하게 다 못 합니다. 예결소위가 있고 예결소소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창구를 좁혀서 협의하면서 대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이 논의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고 또 관련되는 사안들을 계속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자료제출만……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자료제출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금융투자세라는 게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또 5년간 손실이월이 허용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가 어려워져서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오히려 금융투자세의 방식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법안이 통과될 당시, 논의될 당시의 증시상황으로 봤을 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예상되는 세수의 총액과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예상되는 세수의 추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준비해서 잘 정리해서 나중에……

○양경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켰을 때의 감세규모를 연도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세규모의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때 물론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은 많은 비중과 숫자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는, 설명해주시는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나 법을 바꿀 때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인한 자료를 내야지,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너무 많은 거짓말과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에 대해 시정할, 정정할 기회를 드리려고요. 사실과 다르게 애

기를 하셔서……

○소위원장 류성걸 잘못 발언한 게 있습니까?

○진선미 위원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건 이 방향이 옳고 이 제도를 도입할 건데 단지 시간 유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제도가 옳다면, 지금 그 제도 자체에 대해 팩트와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 시정하는 내용들의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내셨냐’라고 얘기했더니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보도자료는 2020년도에 나온 게 다고요, 기재부 산하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의원실에 돌린 설명자료잖아요. 이것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낸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냈습니다.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언제 낸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보도자료를 나중에 전체 다 우리 위원님들께……

○진선미 위원 그리고 그걸 보도자료로 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것은 위원님, ‘이러이러한 내용이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서로 오해가 없도록 관련되는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또 그렇게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시행 2년 유예와 또 대주주요건 완화 관련된 사항 그리고 추가해서 나중에 증권거래세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속도로 가서는 11월 30일까지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몇 페이지이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173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사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배우자한테 자산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제3자한테 팔게 됐을 때 배우자는 자기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 5년 이내에 팔게 된다고 하면 처음 증여했을 때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제3자한테 그것을 양도했을 때 증여세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적다고 하면, 그걸 회피했다고 하면 원래 증여했던 그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양도세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2개 다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걸 양도세 회피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법안에 대한 건 아니고 이 앞인데 더 넘어가기 전에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릴 게 있어서……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일단 안건 상정부터 하겠습니다.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206)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789)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878)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45)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607)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789)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366)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43)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025)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817)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285)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354)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963)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20)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756)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06)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859)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90)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33)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92)

(16시12분)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22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세법 관련해서도 1항, 3항, 8항, 11항, 13항, 16항, 20항을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아까 기재부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야당 보좌진들한테 뭘 다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보좌진들한테 돌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한테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돌리신 자료들 빠짐없이 저희 의원실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소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어떤 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관련되는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전체 다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이게 상정이 돼서 순서가 쪽 돼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의 자체적 판단으로…… 금투세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그냥 건너뛰어 버리네요, 보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아, 그것 중간에……

○신동근 위원 이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안된 사항인데 건너뛰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게 아니고요.

간사님,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속도로 가서는……

○신동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양경숙 위원 그래도 합의를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상정은……

○양경숙 위원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시고요.

상정을 하고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면서 또 논의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34항부터 55항까지 전체 상정을 하고 그중에서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1·3·8·11·13·16·20항입니다. 논의 다 할 겁니다.

○**고용진 위원**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고용진 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부수법안하고 다른 겁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도 논의를 다 하겠지만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은 법률안 1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권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십니다. 최종적으로 각 법률안에는 이미 지정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전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은 다 논의를 할 겁니다. 논의를 하는데, 지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일반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진짜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항이 있는 부분의 논의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을 먼저 논의하자 이런 겁니다. 논의를 다 할 겁니다.

○**고용진 위원** 여러 가지 행정지침을 정비한다든지 관련 규정 그런 걸 좀 제깁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도 정리는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류성걸**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국제기본법과 국제징수법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논의를 해 보니까 한 항에 들어가면 이런 게 궁금하고 또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일단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시지요.

사실은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점 있는 건 여기서 그것 가지고 2시간 얘기한다고 합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속도라면 저는 내일쯤이면 일독이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지금 이 자료가 전체 7권입니다. 이 똑같은 자료……

○**고용진 위원** 시간에 쫓기는 건 사실이니까요.

○**신동근 위원** 그것은 잠시 정회하시고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지금 6권까지 준비가 돼 있고 지난번에 또 간사님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돼 있는 것까지 하면 이런 자료가 7권입니다. 7권이라서, 물론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는 11월 30일까지 논의를 다 마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한 2시간 됐나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법 관련해서는 항을 한 개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11·12·13·16·2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소위 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2쪽 현황입니다.

현재 결손금 공제방법으로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와 결손금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에서 공제하는 소급공제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중소기업에 한해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기업의 공제한도는 15년 이전에 100%에서 19년 60%까지 축소된 반면 공제기간은 최초 도입 시 5년에서 20년 이후 현행 15년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18개국은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없으며 영국과 일본은 50%, 미국은 80%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관련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6년 귀속분부터 도입한 이후 점차 한도를 축소해 왔으므로 다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100%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 상향에 따른 이익이 최근 경영여건 개선으로 소득이 크게 발생한 일반기업에 주로 귀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2020년도에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받지 못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박홍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합병시 이월결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상향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한도에 대해서는 아마 실수로 삭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신다고 하면 중소기업 한도를 100%로 하는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을 살피셔서 정부안대로 80%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장혜영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일단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보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절반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만 절반은 없다고 하니까 특정한 경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60% 존재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OECD의 평균적인 기준에 이미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정을 하자는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면 사실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미 소득의 100%를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시키는 것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데보다는 최근에 경영여건 개선으로 소득이 더 오른 일반기업에 주로 귀착될 거다, 특히 작년이랑 올해 법인들 호실적을 생각해 보면 이미 전될 만한 기업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그 적자기업이 흑자로 전환을 해야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목적과 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의견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기업의 경우에 지금도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최근에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니까 세부담을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중소기업 이외에 대기업들도 최근에 경영실적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BSI지수를 보면 체감경기도 굉장히 하락세이기 때문에 80% 정도는 해 주셔야 앞으로 버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정부안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혜영 위원님, 일단 이것은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장혜영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사정이 좋은 기업들은 혜택을 배제할 방법이나 실익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사실 사정이 좋은 기업들은 이월결손금이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해당이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해당이 없습니다.

○**장혜영 위원** 작년, 올해 법인들 꽤 호실적이 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기업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장혜영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일단은 정부안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9페이지입니다.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안은 배준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기업 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 부분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후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 법인주주 단계에서 재차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배준영 의원님 안에 관해서는 일반회사의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부안은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페이지 표에 보시면 배준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 대해서 기존 현행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어느 정도 개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준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모든 퍼센티지 내에서 50~20%까지 익금불산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안 같은 경우에 일반법인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 다 상승하게 되는데 지주회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 50%가 하락하고 그 위에 10%,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안처럼 지분율에 따른 3단계의 익금불산입률, 즉 30% 80%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구간

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문턱효과 발생으로 인해서 지분율 차이가 1%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률 차이가 50% 나는 효과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장사협의회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기존에는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보유하도록, 자회사 요건이 30%였습니다. 이것을 2021년에 개정하면서 20%에서 30%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 상장법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까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6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장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는 지주회사 관련된 사항을 초점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도입이 돼서 당시에는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운영이 됐고 또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도가 지주회사에 특혜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특혜가 가는 점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정부안처럼 일반회사, 지주회사 구분 없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심플하게 만드는 것을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이거 공평위하고 상의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공정위가 동의를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결국 마지막에는 동의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이야 익히 서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 지주회사와 관련해서 익금불산입률이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현저하게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 제기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재부에 보낸 서류입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한 것을 다시 받아 봤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 신중검토. 동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축소가 되고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 개정은 정책 일관성 및 기업의 신뢰이익 저해……’ 이런 얘기가 있고요. 법 개정 후 신규 편입 자회사뿐만 아니라 기존 자회사에게도 적용되고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해서 이중 조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배치되고, 정책효과성 훼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지주회사에만 불이익을 초래하는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왜곡하여 향후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협의하셨는지 제가 좀 의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공정위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세제실장님이 유동수 위원님 질의 시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동수 위원** 세제실장님,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장님, 제가 기재부 마지막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시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는 지주회사 제도가 충분히 정착됐다, 이게 99년에 도입했으

니까 24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최소지분 요건이 21년 12월에 20%에서 30%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분을 30% 미만은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그걸 굉장히 상의를 하고 공정위의 양해로 기존 지주회사들은 4년간 유예를 해 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는데 그래도 오늘 배준영 의원님 안도 있고 하니 저희가 조정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실장님, 지금 이거 허위보고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이게……

○**유동수 위원** 아니, 제 대화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분명히 같이 합의를 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세제실장께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됐다고 저한테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저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금 반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당초에는 공정위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저한테 공정위와 기재부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갖다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시간까지 양 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문건이 없으면 세제실장님,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주회사 상장법인 경우에는 이게 너무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고 또 -20%, -5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다음 회의 때……

○**고용진 위원** 위원들 의견을 좀 들으시고 나중에 하세요, 최종 정리를.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조금 전에……

○**고용진 위원** 왜 위원장님이 다 정리를 해 버리세요?

○**유동수 위원** 류성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답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거든요. 저런 답변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다음 논의할 때 공정위 당국자가 꼭 여기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자마자 얘기들이 앞뒤가 다르고 또 정리해서 오겠다 그러고, 정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손을 들)

○고용진 위원 잠깐 계세요. 차관님, 기회 드릴게.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두루뭉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제삼자가 볼 때 어떻게 했는가를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들은 또 여러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부가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법을 시행하려다 안 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들어와라’라고 막 유도했다가 어느 정도 목적 달성하면 그 다음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나 여러 가지 배려조치 없이 막 바뀌 버리고, 정부가 그렇게 독재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유예기간을 4년 줬으면, 그래서 그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 보셨어요? 오케이 하던가요? 물론 우리가 다 오케이를 받아서 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입법 취지, 정책 취지에 동참했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저항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에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누르고 왔단든지 대충 구두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왜 지주회사를 우리가 유도했는지 그건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유도를 위해서 지주회

사의 경우 익금불산입률을 다른 일반법인보다 높여서 해 줬던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정위가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다 그냥 합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왔던 것이고……

이렇게 되면 최대 50%가 감소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님, 13페이지에 ‘공정거래법에서 상향된 자회사 의무 지분보유율뿐만 아니라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도 함께 고려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했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문위원 김경호 상장사협의회 의견인데요.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는 20%를 30%로 상향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할 자회사 보유지분비율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20%를 계속 가지고 가도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주회사 비율을 올리지만 기존에 있던 지주회사들은 종전 규정을 따라도 된다는 의견을 상장사협의회에서 줬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려도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래서 현행대로 특례유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큼니다만 만일에 그런 여러 가지 단일화하고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황에 비춰 가지고 익금불산입률 하한을 30%에서 20%로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제가 세제실장이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공문은 입법예고 기간에 왔던 공정위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유예기간을 늘리고 해서 그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정부의 의견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외에도 지주회사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면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합의를 해도 4년 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국회가 어떻게 바뀔지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안 해도, 다음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익금불산입률을 해서 이중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들 자료에 나와 있는 WGBI 편입국의 국제이자소득 과세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에도 이렇게 보고가 와서 저희가 ‘이게 실제 사실과 다르다. 정확한 자료를 요청해 달라’ 그래서 기재부에서 원천징수 면제 밑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와서 제가 국감 때 ‘이렇게 지금처럼—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처럼—보고하면 허위보고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양 간사 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냈는데요.

오늘도 기재부의 답변 태도를 보면 사실 여부라든지 그간에 정부부처 간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답변들을 자꾸 합니다, WGBI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자료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련되는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꼭 배포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신동근 위원 공정위에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익금불산입제도가 말하자면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지주회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에 잘 따른 부분이 손해를 보게 되는, 아닌 부분은 오히려 더 이익이 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일관성 없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잘못하면 경제민주화에 역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자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주회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

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미 위원 이거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혜영 위원 국감 지적사항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 자료 관련해서는 저도 나중에 보고……

○진선미 위원 자료를 왜 변화된 걸 안 가져오고 예전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그거 관련된 사항입니까?

○장혜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좀 이따 보고 관련된 사항은 간사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진선미 위원 이것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설득……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거자료라든지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치밀하게 또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법안 관련된 의견인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에 대해서요?

○장혜영 위원 예, 법이요.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과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만약에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화만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익금불산입을 크게 완화시키는 형태로, 저는 개별 기업 지배를 결과적으로 돕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익금불산입 규정을 활용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상장 지주회사나 아니면 비상장 법인을 활용해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또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해서 그룹 계열사 이익을, 이 규칙을 이용해서 배당금 받게 만들면 사실 비상장 특성상 적절한 규제나 견제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의 내용들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논의는 결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치밀하게 해서, 지주회사 상장법인 경우에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공정위의 담당자가 꼭 참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8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28쪽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였으며 보험계약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으로는 기존 IFRS4를 대체하는 IFRS17이 23년부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측정을 원가 기준에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의 인식 방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손금산입 및 과세이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IFRS4에 따른 보험료 등의 현금주의 수익인식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IFRS17에는 부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IFRS17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RS17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등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현행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IFRS17에 따른 경우에 현재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따라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 보험사의 부채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IFRS4의 입장에서 낮은 이자율, 그 당시 처음 보험금을 받았을 때 한 시점에서의 이자율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평가는 할인할 때 분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작아지게 됩니다. 부채가 작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계변경에 따른 이익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회계변경에 따라서 갑자기 이익이 많이 생기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보험사의 전환이익에 대해서 특례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초 4년 동안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3년 동안 균등하게 익금산입하는, 이렇게 해서 전환이익에 대해서 단순한 회계변경만으로 보험사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었습니다. 또한 계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부터, 즉 2023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기업이 원할 경우에 올해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기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 전환이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조기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관련해서 유사한 취지의 내용으로 조해진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직 미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려면 저희가 보험업 법령에 따라서 이 특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업 법령이 먼저 22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개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IFRS4에서 IFRS17로 바뀌는 부분들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시행을 하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내년에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보다 미리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쟁점이 되겠네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저 질문 좀……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IFRS17을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는 보험사에도 이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려면 보험업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고용진 위원 현재 보험업법은 정무위 소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정무위에서 이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업 법령은 시행령이고요 저희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먼저 가고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고용진 위원 이것 정리되면 시행령을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광효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업법 시행령이 22년부터 적용된다고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32쪽의 개정안 관련해서 올해부터 적용했을 때하고 내년에…… 올해부터 적용하면 내년에 신고분부터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 해서 할 때하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지요?

뒤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자기가 선택해서 올해부터 IFRS17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환할 때 이익이 생깁니다. 이익을 우리가 준비금으로 손금 잡아서 과세되지 않게 하는 건데,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사는 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올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과세가 되지 않게 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이익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표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라고 하는 것은 올해 시행을 하면서 내년에 신고하는 거고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리고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은 2023년이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차이가 결국은 이익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보험업계에 대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까?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니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효 그것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그래도 대략 뭐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IFRS17을 적용할 경우에 과다하게 이익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이걸 바로잡아주자 이 건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어느 정도 차액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생명보험사가 장기적으로 보험을 많이 줬을 때, 연금 같은 것 많이 팔았거든요. 생명보험사는 좀 불리하고 손해보험사는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최근에 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인율이 돼 가지고 보험부채가 감소해서 좀 더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할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

들고, 이것은 준비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세를 안 하는 것이지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는 아닙니다.

○**신동근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22년에 조기 적용하려는 회사와 23년에 적용하려는 회사가 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손해인데 왜 22년에 조기 적용하려고 그러지요, 동시에 하지 않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특정 손보사의 경우는 IFRS17을 적용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경우는 올해 좀 손실이 있어서 적용해서 이익을 조금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특례 이연이라고 그러냐요, 이걸 특례 인정을 안 해 주면 과세로 손해 본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보전해 주자 이런 얘기지요?

○**조해진 위원** 그걸 조기 적용했을 때 다른 회사들과도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1년 먼저 하는 거고 실제 1년 뒤에 하는데 똑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시점차는 있지만 혜택의 크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넣는다면 나중에 부칙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일단 관련되는 안을 가져오시고, 조금 전에 신동근 간사님 질의 때 답변을 했듯이 2022년도에 하게 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사실상 유리한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부분이니깐 이 부분은 부칙 관련되는 조항을 가져오시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FRS17을 적용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쟁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선미 위원** 양쪽 추계치의 차이를 드러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고 안 되고. 불가능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그것은 불가

능합니다.

○**진선미 위원** 이익은 나는 것 같은데 얼마가 나는지를……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처음에 추계할 때 대충 들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또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금리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추계하기가 곤란합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기업이든 개인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금리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걱정을 해 줘니까? 사실 납득은 잘 안 돼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이게 기존에는 원가주의인데 지금은 현재가치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지급할 것을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장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같은 건 장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큼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특성을 좀 감안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홍영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국제회계기준이 바뀌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다 똑같이 되는데 보험사가 유달리 금리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IFRS17 적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도록 하고 부칙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친 부분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38페이지 법인세 과표구간 변경 및 최고세율 인하하는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정부안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초과 22%, 두 구간으로 하되 5억 이하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

서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쪽 현황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98년도 28%에서 인하되다가 2012년도부터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었고 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18년부터는 3000억 초과 구간의 과표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2년도 이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16년도 이후 다시 상승해서 2019년도에 24.6%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 세율 21.5%를 상회하여 OECD 국가 중 8위 수준에 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서 OECD 평균 세율 23.2%를 상회하는 11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2015년 16.1%에서 19년도 19.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년에는 17.5%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명목최고세율과 7.5%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2.1%로 OECD 평균 8.8%보다 3.3%p 높으며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4%가 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21년 기준 과표구간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3000억 초과 구간의 법인세 신고법인 수가 103개입니다. 그리고 총부담세액은 24조 7185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요 논거는 첫째,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확대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략하고 셋째,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감소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분 이상의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법인세의 과표구간이 과다하여 조세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주요국의 추세와 맞지 않으므로 구간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 시 세수감소 발생으로 재정 여력이 낮아지고 인하는 극소수의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며 실증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유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업의 세부담 정도를 고려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9쪽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그로스업(Gross-up) 제도, 즉 배당세액공제 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제도 같은 경우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로스업 제도 같은 경우 법인세율을 최저세율인 10%로 일률적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산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과세표준을 2단계로 해서 200억 이하 같은 경우에 20% 그다음에 특례세율로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로스업률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는 5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10%의 특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해서 20%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2배 중과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로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90만 6000개의 법인 중에서 과표기준 5억 원 이하 기업이 전체 85만 2000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중에서 94%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원발의안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상향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인상에만 따른 지방세수의 확대효과는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법인세율 인하로 국세수입이 감소할 경우에는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격차 완화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에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동안 워낙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좀 전에 저희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 나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놓고 초부자들에게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감세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감세규모를 보면 임기 동안에 무려 17조 2082억 원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연평균 3조 4416억 원을 깎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려면 적어도 5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초거대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들의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에 322조 원이었던 사내유보금이 2013년에는 589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않고 유보금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구요.

실물투자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초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아마도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낙수효과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억지 주장입니다. 같은 기간인 2009~2013년에 실물투자가 33조 원에서 9조 6000억으로 줄었어요. 세금 깎아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쌓아 놓고 안 쓰고, 투자는 안 하고 이런 짓들만 하고 있는 초거대 대기업들한테 지금에 와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깎아주자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언어도단이에요.

더더구나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임기 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제단체장들 만나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차관님, 기억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양경숙 위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기재위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최고구간을 이렇게 감세해 주는 게 부자감세 아니냐’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말했어요. 이게 경제 수장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이 있기는 합니까? 창피한 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민들한테는, 동학개미들한테는 손실이 나도 세금을 걷겠다고 악착같이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초대기업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임기 초반부터 이 난리를 피우고…… 임기 내내 수십 조를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총리가 부자감세 추진하다가 낙마하고 사퇴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황재세 도입하고 부자증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예산이나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함

니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도 부양하고 서민들도 보호해야 하잖아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지요,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러면 부자들한테, 돈 많이 버는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영원히 많이 걷으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만이라도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그 돈으로 세수를 충당해서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기도 부양시키고 소득의 재분배나 자원의 재분배도 시키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의사 관련되어서 이제까지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제가 시간을 대충 한번 봤습니다. 그대로 제가 가만히 있으면 5분씩 7분씩 갑니다, 한 말씀 하시면서.

그래서 소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짧게 하시면서 요약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우리가 증세·감세 문제를 고민할 때 특히 지금처럼 법인, 기업의 증세·감세 문제를 고민할 때 이것은 꼭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게, 가령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줬다 그럴 때 절감된 세액만큼 그게 그 대기업의 오너 개인의 주머니에, 금고에 들어가느냐 또 거꾸로 증세를 했을 때, 세금을 더 부과했을 때 그 늘어난 부담세액을 그 기업의 오너가 자기 주머니에서, 금고에서 다 꺼내 가지고 세금을 내나, 우리가 논의하는…… 그 논의를 듣다 보면 저는 마치 그런 걸 가정해 놓고서 논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생태계 아닙니까? 대기업만 하더라도 오너도 있지만 임원도 있고 또 중간간부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또 거기 투자한 주식 갖고 있는 큰손부터 해 가지고 개미투자자까지 주주들도 있고, 그걸로 기업이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같이 다 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도 지분 있습니다. 주식 안 가지고 있지만 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 혼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선단처럼 움직입니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그 밑에 중

소·중견기업, 하다못해 말단 납품업체까지 거기에 속한 임원과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과 또 그 주변, 그 기업들로 인해서 먹고사는 지역경제, 하다못해 골목상권까지 그게 하나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기업에서 이윤이 나더라도 그 전체가 낙수가 됩니다. 거꾸로 부담이 생기면 또 전체가 증가가 됩니다. 나눠 가집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걸 봐야 이게 정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마치 세금 깎아주면 오너나 특정 대기업 대주주들, 그 깎인 만큼 그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고 세금 더 늘리면 그 사람들이 세금 다 내고, 그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헛바퀴 도는 것같은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는 또 기업은 하나의 생태계다, 선단이다, 공동체다, 하나의 팀으로 간다. 저 말단의 골목상권, 골목 구멍가게 주인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에 어떤 정책이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저는 그 기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시기마다 경제상황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경제에…… 기업인들에게 꼭 감세해 줬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감액이 되며 그게 또 개개인에게 얼마나 현금으로, 현찰로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기업인들에게 더 기업인을 평가해 주고 경제활동을 평가해 주고 긍정적으로 봐 주는 신호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의욕이, 동기 부여가 되고 또 투자 여력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기에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그런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이 정책은 시도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세제실장님, 47쪽의 법인세 과표구간 이게 가장 최근치로 업데이트된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게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5개 국가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법인세는…… 법인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도관이지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법인세에 부가감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법인은 부자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법인세의 최종적인 귀착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귀작은 주주 그다음에 종업원……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를 보니까 과표구간이 1개인 나라가 35개나 되어서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갈 건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고 그 속에서 세제 방향도 나와야 되고 또 이게 국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수준에서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법인세의 비중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전체 조세 비중에서. 실제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못 올렸잖아요, 계속.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지만 우리나라 부가세는……

○**신동근 위원** 외국 같은 경우 거의 19% 정도, 18% 정도이고 우리는 10%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신동근 위원**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가 한 4~5% 되고 해외가 한 7~8% 정도 될 거예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좀 낮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걸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가가치세 올렸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어쨌든 간에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한 25%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년이 한 20% 되고 조금 더 올라서 21·22년에는 한 21% 될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올해는 한 23%에 육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23%까지 올라갔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신동근 위원** 아직까지 그게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21년인가요? 보니까 한 21.5%, 그러니까 사실은 OECD 평균 정도, 우리가 북유럽처럼 고부담은 못 하더라도 한 25%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복지프로그램을

그대로 안 해도 국가재정, 부채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될 세제는 많은데, 그래서 이걸 쉽게 한번 깎아 버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를 더 인상하자는 얘기는 안 해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걸 주장하는 분들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 이걸 인하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세금이 더 걷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낙수효과 과탄났다는 것 이미 검증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우리나라 세계 초일류 대기업들 불러서 제대로 투자하는지 한번…… 왜냐하면 대통령 새로 들어가면 1000조씩 투자한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제대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국감에 부르려니까 여야 합의가 못 돼서 안 불렀는데 자기들이 부리나케 와 가지고 그동안 10년간 투자했던 내용 다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기간이 굉장히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세제고 뭐고 이걸 그냥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대 같은 데도 보니까 내연기관이 한 60% 차지한다는데 내연기관에서 돈 버는 것 가지고 수소나 전기차에 다 투자하고 미래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제 조금 감면해 준다고 이게 투자…… 보니까 한 업체당 500억 정도 효과가 가는 것 같은데—물론 중소기업이야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차라리 투자했을 때 투자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물론 그것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용인에 무슨 반도체 단지 들어서면 그런 데 대한 어떤 행정·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세제 기반을 마음대로 잠식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점점 갈수록 생산성도 낮아지고 또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법인세 손대는 건 인상도 아니지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지난 정부 때 체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지나친 노조 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인가요, 해외에 있던 한국법인이 다시 한국으로 리턴한 기업이 26개,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차려서 빠져나간 게 2323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는 거지요.

기업 하는 사람이야 법인의 가장 부담되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조금이라도 세금이 낮은 쪽으로 찾아가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막연히 부자감세로만 단정하고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덜 들어오고 한국기업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면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줄 수가 없지요.

‘법인세 감세해 줬더니만 투자 승수효과가 없더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감세해 줘도 그게 단순히 기업의 투자유보금으로 적립되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들이 유의미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액된 세금만큼 예를 들면 시행령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지원이라든지 노사상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법인세 인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 하던 걸 25%로 올린 게 지난 정부인데 이것을 인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기업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상복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G7, OECD 국가들이 다들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승수효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조금은 유연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정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영국은 어떻게 하기로 한답니까, 법인세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영국은 다시 올리기로……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19에서 25%로 올리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고용진 위원**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한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바이든 행정부는 38%에서 21%로 낮췄다가 그대로……

○**고용진 위원** 다시 올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대로입니다. 통과 안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바이든 행정부도 IRA에서 최저한세율 올리고 법인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미국이 지금 최저한세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7% 최저한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가 15% 도입되기 때문에……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최저한세율 올리고 또 법인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위에서 이것 처음 다루는 게 아니고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세제개편안 낸 뒤부터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단 한 치도 달라진 게 없고 정부 입장도 달라진 게 없고 입이 아프게 반복하고 있어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유인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험이나 세계의 모든 관련 아티클(article)이나 실증적 자료를 봐서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수감소가 자그마치 2조 5000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이 법안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수감소가 없다 그러면, 세수감이 작다 그러면 ‘그래 한번 보자. 옛날에는 그랬는데 또 달라

질 수 있으니’, 그런데 자그마치 세수감소가 2조 5000인데…… 낙수효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미 철 지난 이론인데……

위원장님도 짧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당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해요, 우리 위원들을. 얘기해 봤자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논의의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윤을 많이 내는 거다’,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69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가설이 이제 잘못됐다, 제가 아는 한은 지금 주류 경제학이 그렇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전 세계 20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매년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거기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 문제는 왜 그러면…… 저는 법인세를 아예 하나도 건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재부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IRA법을 통과시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복지에 엄청난 돈을,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는 윈드폴 텍스(windfall tax)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1%로 낮췄다가 다시 28%로 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트러스트 정부가 25%를 19%로 낮추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보리스 존슨 정부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도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확보가 최우선이고 트러스트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 이거

예요. 지금 우리가 꼭 말한 것을, 다 감세 조치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럼 그걸 어디서 메꿀 건지, 그것 하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 확인 좀 합시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기업들의 이런 법인세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까? 어때요? 우리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일반적으로 좀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뭐가 높아요? 어떤 게 높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 하나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해야 되고, 아까 소득세 얘기할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그것은 의료보험을 비롯한 간접비용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법인세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그렇게 기준을 자기들 편리한 잣대를 대 가지고 이때는 의료보험을 넣어야 되고 법인세는 빼고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결코 법인세가 높은 게 아닙니다, 법인세 포함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봤을 때.

다음부터는 소득세 가지고 말할 때 무슨 의료보험이나 간접비용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해요? 그것은 말을 안 해야지. 그래서 이런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왜곡된 팩트를 가지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법인세 논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깎아줬을 때 대안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가장 높은지 작은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법인세의 규모 관련한 것은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4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OECD 평균이 2020년도에 2.7%입니다, GDP 대비. 그런데 한국이 3.4%,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GDP 대비했을 때는 법인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수감 규모는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법인세로 인해서 나오는 세수감이 사실 23년

에 한 6000억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만 이걸 통상적인 세수증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국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시는데 영국은 이게 부자증세다, 부자감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세수는 늘리지 않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도 부총리나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금 깎아주겠다. 우리 야당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 깎아줄게.

저는 기재부는 적어도 그런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재정을 확보해서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희가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그겁니다.

○**홍영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마치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가 활성화된다…… 왜 한국의 기업들이 작년, 올해 한 3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다 거기서 잡니까? 법인세 보고 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 문제는……

○**홍영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법인세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장과 여러 가지 경제·경영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식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미국으로 못 가게 해야지요, 기업들을.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사실은 반복적일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분들도 전혀 변화가 없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법인세라는 것, 조세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조정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세금을 안 받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국면이 마치 법인세율이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경제도 어려워졌고 투자가 줄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코로나19가 없었던 나라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지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습니까? 그 기록하지 않은 상황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그중에도 본인들의 생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은 곳이 있고, 아예 문을 닫고…… 여행업이나 진짜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늘 얘기하듯이 균형을 맞춰주고 조금 더 어려운 경제영역들을 보강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정부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재정수요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많은 분들이 논쟁은 있지요. 여전히 낙수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1970년대의 너무 오래된 이론이고 지금은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낙수효과, 특히 투자활성화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통설처럼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확실한 근거에 근거해서 법인세를 인하해 가지고 뭔가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이후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보완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수요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3년 동안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났고 그 어려운 영역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제대로 보완을 해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인 일자리, 경로당 가면 전부 손 붙잡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용돈요? 돈이 부족할 때는 40만 원도 생활비인 거예요. 용돈별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진짜 법인세율 인하,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인에 관한

여러 가지 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법인세를 인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반이 명확하게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세제실장,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잠깐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번 정부에 세제에 관련한 철학이 있는냐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요.

○홍영표 위원 제가 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런데 법인세 관련해서는 낮고 단순한 과세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게 투자도 유도하고 해외투자도 유인한다, 그게 선진국형 과세체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4단계 누진세율을 가진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인세 다 마치고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12항 설명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하게 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이것은 내가 반박하고 싶은데, 세제실장만 일방적으로 말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아까의 답변이기 때문에 반박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장 위원님……

○장혜영 위원 법안에 대해서 저도 토론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법인세 관련돼서요?

○장혜영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꼭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예, 그래도 첫날인 만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세요.

○장혜영 위원 일단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자꾸 법인을 그냥 이익을 배분하는 도관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을 아까 하셨는데, 진짜 그냥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서야 실체로서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의 혜택에 대해서 법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타당한 일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은 특수 누리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시기에 기재위에서 제가 특별재난연대세라는 걸 발의했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시적으로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건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주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행정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정치적인 상상력 혹은 행정의 유연성 내지는 뚝심은 꼭 이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작동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픡니다.

이번 법인세 감면은 아무리 부정하셔도 정말 찼찼찼 부자감세라고 생각하고요. 과표 3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103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감면효과 32조라고 하지요. 세수감소 2조 5000에 달하고요 감면혜택 누구에게 가는가? 정부 추산으로 봐도 대기업한테 더 많이 가고요. 예정치 추산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꾸 기재부에서 한국 법인세수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다수가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저는 진짜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인세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영업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요. OECD 평균이 13%지만 우리 평균은 16.6% 아닙니까. 게다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지요. 법인의 세제혜택에 따라서 법인을 선호하고 이런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의 문제를 누락하고 절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온갖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목세율을 가지고 기업 부담 비교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효세율로 보면 아까 홍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고세율 구간 19.4%입니다.

어쨌든 재벌체제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취약한 자본소득과세 이런 걸 고려하면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맞고 옳고 그래서 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왔고, 이런 재정여력을 확충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54페이지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대상에서 소액 부정수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과 부가세법의 예정신고에서도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7쪽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업자, 온투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14%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온투업자 같은 경우는 현재 P2P 개인 간 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도 이미 영구적으로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도 14%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0페이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식 변경입니다.

71쪽입니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은 현재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해외소득면세방식, 즉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되 해당 국가에서 부담한 세금을 자국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등 6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소득면세방식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세율만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일본 등 32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투자소득이든 해외투자소득이든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투자소득 간에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소득면세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타국 기업과 동일한 세부담을 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해외소득면세방식은 해외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해외소득면세방식은 우리 기업의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소득면세방식은 제도가 간소하여 운영 과정에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소득면세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국내투자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해외소득면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저세율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면세방식을 전환하면서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현재 25%인데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해외소득면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 지분요건이 10% 이상, 25% 이상이고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지분율 요건이 5%, 영국의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면세방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분율 요건을 25%에서 10%로 낮췄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74페이지에 나오는 ‘다만’ 이하에 대해서부터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투자를 유도해서 국내투자, 일자리 줄어들고 하는 것을…… 해외투자와 국내

투자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도 이러한 형태의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한 후에 해외투자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소득면세방식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수가 감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해외 유보재원이 국내에 송금이 되면 그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

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투자 활성화로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자회사 요건을 25%에서 10%로 낮추는데, 이것은 외국환거래법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외국환거래법에서 10%의 지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은의 국제수지표상에서도 10% 이상의 지분이 있는 경우에 외국직접투자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아니라고는 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익금불산입방식으로 변경하면 국내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해외자회사의 지분요건이 너무 낮아서 법인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의견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하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익금불산입처리해서 과세를 안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해외법인에다가 자회사들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그 이익금을 불산입하고 편법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우선 첫 번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완장치를 생각하시는 게 저세율국에 자회사 설립해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가 15%로 다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그것은 다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해 드리면, 저세율국에 소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는 자회사는 현행대로 외납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수가 감소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외납세액공제방식으로 하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에 배당을 하면 세 부담이 더, 이중과세가 되니까 송금을 안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수 자체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금을 해야지 법인세가…… 외납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한국이 추가 과세하니깐. 그렇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송금을 해서 그 송금받은 회사가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면 부가세도 늘어나고 법인세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2017년에 도입을 했고 일본은 200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굉장히 송금 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신동근 위원**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해외수출 관련한 부분까지 완화시킨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다른, 전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동근 위원** 이게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이 제도가 처음 거론이 되는데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해외에다가 지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일감 몰아주고 이익이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현지에서 세금 하고 다시 국내로 하면 세금을 전혀 물지 않게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거기서는 세금을 냈겠지요.

○**홍영표 위원** 아니, 거기서는 내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쪽으로 또 송금하면 배당……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지금은 송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또 한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제도로는 미국이 21%이고 우리는 25%이기 때문에 송금을 하지 않습니다. 왜 4%를 더 내려고 하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4%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속이라든지 다른 재산을 증여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홍영표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는 그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기우같이 너무 상상을 많이 해서, 그런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홍영표 위원**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넘어서서 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은 다른 제도로 막아야 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동의하기 어렵네요.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에서 그대로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외국회사들은 다들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서 대부분 비과세로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이중과세같이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돈 벌면 국내로 들여오지를 않잖아요. 그 돈 가져와서 국내에서 재투자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하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해외에 지금 유보돼 있는 돈이 100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와 소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홍영표 대표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 정치하게 설명을……

○**신동근 위원** 나도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설명을 좀 하라고 해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제가 보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시키고 긍정적인 것은 더욱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장혜영 위원 저 자료요구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그 해외유보소득 통계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금 때문에 국내 배당이 안 되고 얼마나 유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추정치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나중에 전체 다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항입니다. 20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89쪽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소득세법 할 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였고 여기는 외국법인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아까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효과 관련해서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내년도 감세효과가 1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내년도 감세효과가 7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 여러 개가 돼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보류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하나 처리되면 같이 처리하는 걸로.

○소위원장 류성걸 예, 오늘 여러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좀 더 많이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다른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오늘 했던 방식을 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고 용 진	김 상 훈	류 성 걸	배 준 영
신 동 근	양 경 숙	유 동 수	장 혜 영
조 해 진	주 호 영	진 선 미	한 병 도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방 기 선
세 제 실 장	고 광 효
국 고 국 장	유 형 철
조세총괄정책관	정 정 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 용 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 만 회
조세 및 고용보협	김 건 영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 재 봉
법인납세국장	정 재 수
자산과세국장	박 재 형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김 성 호